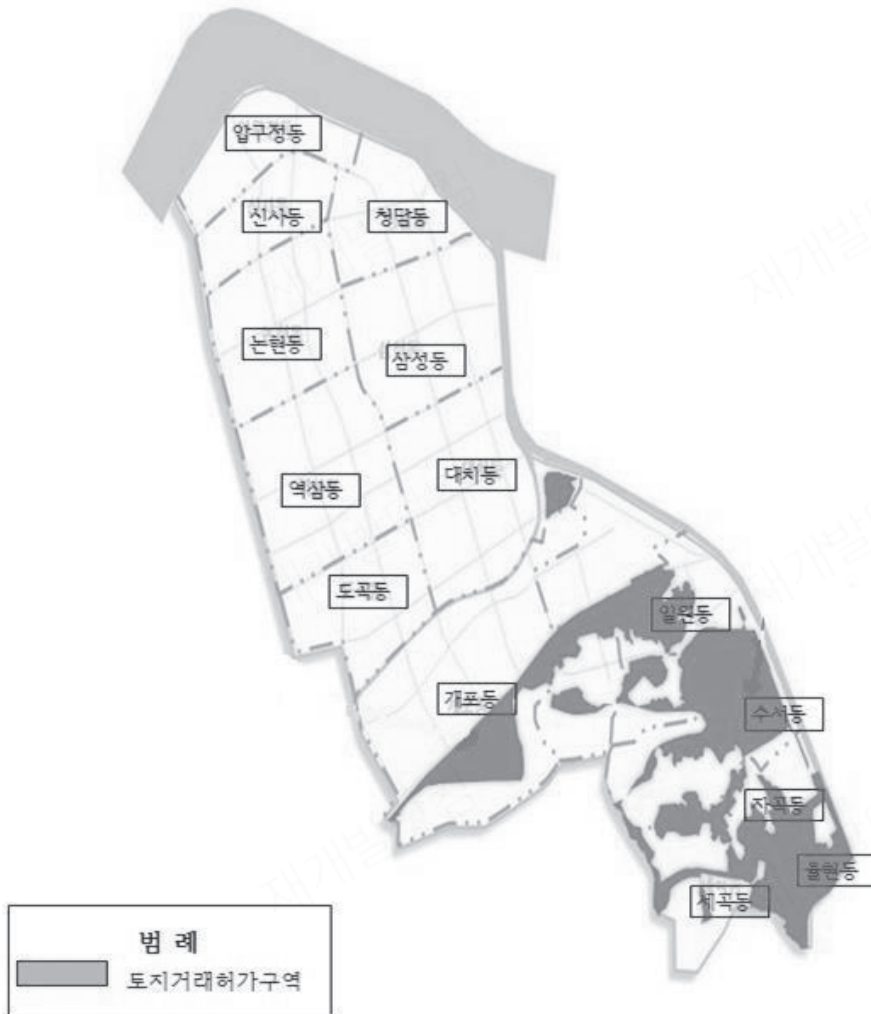


별첨1

지역별 세부 지형도

○ 서울 강남구 (재지정)



○ 서울 서초구 (재지정)



양재동 (1.26km²), 우면동 (2.94km²), 방배동 (1.35km²), 내곡동 (6.2km²), 신원동 (2.09km²),
 염곡동 (1.45km²), 원지동 (5.06km²), 서초동 (0.92km²),

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

◆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-134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5월 13일
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- 가.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기능 수정으로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 본청 주관 추진에 따른 제도적 근거 명확화
- 나. 국민권익위원회의 ‘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’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시 기관 편의에 따라 임의로 채용공고를 생략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, 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열거·제시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
- 다.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되어 있는 해고 등의 예고 규정에 대하여 타법과의 불일치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 해소
- 라. 교육공무직원의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자의 채용, 수습기간, 신분증, 정년 관련 규정 수정
- 마.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과 중복된 조항 정비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

2. 주요내용

- 가. 『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조례』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‘채용부서’를 교육지원청만으로 국한하지 않음(제2조 제2호)
- 나. 교육공무직원의 적용 범위 확대(제3조)
- 다. 『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결과 및 운영방안』에 따라 일시간월적 업무인 경우 9개월 미만까지 승인(제4조 제4항 제3호)
- 라. 『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 본청 주관 시행 계획』에 따라 채용기준 수립, 『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』에 따라 전보기준 수립에 따른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기능 수정(제7조 제1항 제3호)
- 마. 채용 관련 사항 명시 및 신설(제12조)